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김혜련 의원 외 13명발의 】

의안번호 895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혜련 의원 외 13명
- 나. 제안일 : 2019. 8. 7.
- 다. 회부일 : 2019. 8. 1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나.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안 제6조의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17.12.19.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간의 상충 방지를 위하여 제안되었음.

#### 장애등급제 폐지 개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17.12.19.개정/시행 '19.7.1.)

- 용어정리
  - '장애등급'→'장애정도'
  - 장애'1~3급'→'심한장애', 장애'4~6급'→'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1~6급'→'등록장애인'
-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 2 주요사항 검토

####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 조례상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 하는 내용임.



## 나. 서울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임대 현황

- 현재 조례 제2조(적용의 범위)<sup>1)</sup>에 따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총 물량은 533개소로,
  - － 매점은 총 물량 124개 중 장애인이 48개를 우선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중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곳은 **없음**.
  - － 자동판매기는 총 409개소 중 장애인이 131개소를 우선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중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곳은 **6개소**임.

### < 서울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임대 현황 >

(단위 : 개소, '19. 5월말 기준)

구분	총계	장애인 소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기타
			1급	2급	3급 이하			
	533	179	63	112	4	327	22	5
매점	124	48	14	32	2(3급1, 4급1)	64	10	2
자동 판매기	409	131	49	80(6)*	2(3급2)	263	12	3

\*( ) :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개소수

출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 다.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장애인복지정책과)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원안 동의를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장애 2급 이상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변경,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의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배경**

-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 목적에 따른 서비스제공기준 마련
- 장애등록 후 각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 주요내용 (2019.7월 시행)**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개정, 법률상 장애등급제를 폐지(법 제32조)
  - \* 중증장애인(1~3급) 기준 등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18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조사해 수급자를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법 제32조의4)
  - \* (대상사업)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사각지대 장애인 방문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 실시(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 □ 타 법령 개정 사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장애등급을 기준(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정**

※ 전문개정 '19. 6.25.자

## □ 「강동구 매장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6조 : ‘장애등급 2급 이상’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별 표 : ‘장애등급 1~2급’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3~6급’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부산광역시 매장·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별 표 : ‘장애등급 1~2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3~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현행						개정안					
<b>[별표]</b>						<b>[별표]</b>					
우선 계약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제5조 관련)						우선 계약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유족	공유근로자 또는 북한탈주민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유족	공유근로자 또는 북한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략)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행과 같음)			
2	장애등급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					3	<삭제>				

□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애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장애등급(1~2급) (이하 생략)
2	장애등급이 3~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장애등급(3~6급) (이하 생략)
3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미과세대상자	· 장애등급(1~6급) 미과세대상자 (이하 생략)
4	(생략)	
(생략)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하 생략)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하 생략)
3	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이하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제6조 : ‘별표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별 표 : ‘장애인등급 1~2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급 3~4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별표 내 3순위는 삭제(장애인등급 5~6급으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